##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61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김한규·임미애·신정훈

문대림 · 김남희 · 장철민

민병덕 · 손명수 · 김태년

서미화 · 위성곤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고, 최장 1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인 관계로 양육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모 가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 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 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5조).
- 마.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 득·재산 및 신용·보험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 청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 권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고시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 1조의12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지급·반환·회수 등의 효율적인 처리와 이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21조의13 신설).

#### 법률 제 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4의3.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변경·취소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양육비 선지급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로 하고, 같

-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초본의 교부
  - 2.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 3.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산"을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을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을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로 한다.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 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 비 선지급의 결정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양육비 채권자가 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또는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선지급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 선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결정·통지 기한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양육비 선지급 기준"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 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1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게 선지급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및 동의의 방법과 절차, 제2 항과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⑦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및 변경)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게 된 때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변경 및 취소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고시한다.
  - 1. 양육부 · 모가 변경된 경우
  -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 채권 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3. 선지급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

- 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제 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하 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 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와 그 양육비 채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 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받을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금액의 산정, 반환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 구상권의 행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

조의6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선지급 구상액(이하 "선지급 구상액"이라 한다)의 납입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고지는 여성가 족부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관련 변동사항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이하 "선지급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지급 신 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 관·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의11(선지급 신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등이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동의를 전자적 형태로바꾼 문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

- 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12(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결정 및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21조의13(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지급·반환 및 회수 등의 효율적인 처리와 이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선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 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 준액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6.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 7. 출입국 정보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 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
-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나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 2.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에 따라 요청 받은 자료
- 제2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21조의13에 따른 선지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5항, 제21조의10제3항 및 제21조의11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4의3.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변경ㆍ취
	소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u> </u>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u>4. 양육비 선지급</u>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⑦ · ⑧ (생 략)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 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요청 등) ①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 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비양육부 ·모 또는 양 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7) · (8) (현행과 같음) 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 1. 비양육부 ·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 2.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 3. 비양육부 · 모 또는 양육비

② (생 략)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 대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 자료

② (현행과 같음)<삭 제>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 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 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 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 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 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 정한다.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 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 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 <삭 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 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 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 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 〈삭 제〉

<삭 제>

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 사) ① (생 략)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세15소(상육미 이행 성구 및 소
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u>같다)</u>

- ③ · ④ (생 략)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저어 관한 조사) ① (생 략)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요청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 저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 ③ · ④ (현행과 같음)
세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
<u> </u>
②
عال المال على المال
<u>제21조의6에 따</u>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u>나 중퓩미가 신시됩된 경구</u>
· ③ ~ ⑤ (현행과 같음)
레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관한 법률 |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 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 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 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 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 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 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 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 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 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 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u>제21조의6에 따라</u>
상이 바퀴 가리그리 귀스
<u>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७ (१४५ ६ व)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 (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 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등에 필 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미성 년 자녀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 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양육비 채권자가 제11조에따른 법률지원 또는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지급방법을 포함한다)를 결정

하여 선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0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결정·통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있다.

③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급기 간 및 지급방법에 관한 기준 (이하 "양육비 선지급 기준"이 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게 선지급 신청이반려된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 급의 신청 및 동의의 방법과 절차,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통 지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 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⑦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및 변경) ① 이행관리원의 장 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게 된 때에는 양 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 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

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하거 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육비 선지급 결정의 변경 및 취소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 1. 양육부 · 모가 변경된 경우
-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채권 금액에 변동이 발생한경우
- 3. 선지급 대상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 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 급을 중지하거나 양육비 선지 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와 그 양육비 채무자에게 각각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 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그 전부도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받을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 육비 선지급금 반환금액의 산

<신 설>

 정, 반환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 구상권의 행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선지급 구상액(이하 "선지급 구상액"이 라 한다)의 납입을 양육비 채 무자에게 고지하고, 양육비 채 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 라 징수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 항의 통지 및 제2항의 고지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이행 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관련 변동사항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이하 "선지급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등에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선지급 신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

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선지급 신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 리원의 장은 제21조의10제1항 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 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 등이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동의를 전자적 형 태로 바꾼 문서를 첨부하여 금 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 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 의10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계3 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 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

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 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 용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 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관 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2(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 지급에 관한 결정 및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 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다.

제21조의13(전산관리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지급 · 반환 및 회수 등의 효율 적인 처리와 이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전산관리시스템 (이하 "선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 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 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 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 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 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

   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 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 명서)
- 6.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 7. 출입국 정보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제23조(수수료) ① · ② (생략)

<신 설>

<u>정보</u>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 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 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 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나 제공하는 정보등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양 육비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 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 ② (생략)

제27조(벌칙) ① <u>제17조제5항</u>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신 설>

<u>인</u>
2.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
<u>1조의10 및 제21조의11에 따</u>
라 요청받은 자료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의13에 따른 선지급관
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u>제17조제5항, 제</u>
21조의10제3항 및 제21조의11
<u>제6항</u>
 ② (현행과 같음)
∅ (234 全百)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 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